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3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3월 7일

3. 제안이유

- 도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,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등의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가.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규정을 개선·보완함.

(제2조제2항, 제10조 및 제15조)

나.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중 전염병예방방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함(제4조 및 제17조제1항제1호)

- 나환자 ⇒ 한센환자
- 대한나환리협회 ⇒ 한국한센복지협회
- 음성나환자집단촌 ⇒ 한센정착농원

다.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보완함
(제13조제1항)

임대주택 취득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⇒ 취득세
신고납부기한 (30일)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시도 감면 가능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문구의 보완과

전염병예방법 개정(법률제6162호, 2000.1.12)에 따라 나병관련
용어를 국제어인 한센병 관련 용어로 변경하고,
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임대사업자의 감면 범위를
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까지
확대하려는 것으로서

○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 제10조(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) 중 “금원(사전적
의미 : 돈의 수효)의 충당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는
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,

“금원의 충당” 이라는 용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
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